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6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)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)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00조 제3항제1호	100 200	200 250	300 300
나.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00조 제3항제2호	200	250	300
다.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00조 제1항	1,000		
라.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00조 제3항제3호	200	250	300
마.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	법 제100조 제2항제1호	500		
바.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	법 제100조 제2항제2호	500		
사.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·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100조 제2항제3호	500		
아.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·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100조 제2항제4호	500		

자. 법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100조 제3항제4호	300
차. 법 제82조에 따른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	법 제100조 제2항제5호	500
카. 법 제9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의 명칭 또는 단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	법 제100조 제3항제5호	300